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마다 수립·시행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9828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공급망 위험 예방과 공급망 교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집행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공급망정책담당관, 공급망대응담당관)을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4명(고위 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8명, 6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6.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제6조의3으로 하고,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경제공급망기획관) ① 경제공급망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경제공급망기획관 밑에 공급망정책담당관 및 공급망대응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공급망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한다.

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총괄·조정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시행계획 수립·이행 지침 마련, 계획 간 연계·조정
4.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5.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구성·관리
6. 경제안보품목 및 서비스의 지정 및 관리
7. 경제안보품목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8. 공급망 안정화 관련 정책에 관한 평가

9. 공급망현황 조사 및 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④ 공급망대응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한다.

1. 공급망위험의 점검
2.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및 지원
3. 공급망위기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표준안의 작성·운용,
위기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
4. 위기품목의 지정 및 해제, 위기품목의 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치
5. 공급망안정화 기금의 감독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정책
6.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 설치
7.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외국정부와의 협력 및 공동연구·인력교류

별표 1 중 총계 “1,068”을 “1,082”로 하고, 일반직 계 “1,058”을 “1,072”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38”을 “39”로 하고, 서기관 “67”을 “69”로 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91”을 “92”로 하고, 행정사무관 “390”을 “398”로 하며, 행정주사 “124”를 “126”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1,068”을 “1,082”로 하고, 일반직 계 “1,058”을 “1,072”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38”을 “39”로 하고, 서기관 “67”을 “69”로 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96”을 “97”로 하고, 행정사무관 “404”를 “412”로 하며, 행정주사 “104”를 “106”으로 한다.

별표 4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	14명	2027년 3월 31일까지
-----------------	-----	----------------

망정책담당관, 공급망대 응답담당관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 명, 4급 또는 5급 1명, 5 급 8명, 6급 2명)	
-----------------------	---	--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조의2(경제공급망기획관) ①</u> <u>경제공급망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u>② 경제공급망기획관 밑에 공급망정책담당관 및 공급망대응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u> <u>③ 공급망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한다.</u> <u>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 정책에 관한 총괄·조정</u> <u>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u> <u>3. 시행계획 수립·이행 지침 마련, 계획 간 연계·조정</u> <u>4.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u> <u>5.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u>

화위원회의 구성·관리

6. 경제안보품목 및 서비스의

지정 및 관리

7. 경제안보품목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8. 공급망 안정화 관련 정책에

관한 평가

9. 공급망현황 조사 및 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④ 공급망대응담당관은 다음 사
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
을 보좌한다.

1. 공급망위험의 점검

2.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및

지원

3. 공급망위기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표준안의

작성·운영, 위기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

<u>제6조의2</u> (생략)	4. <u>위기품목의 지정 및 해제,</u> <u>위기품목의 수급안정화를</u> <u>위한 조치</u> 5. <u>공급망안정화 기금의 감독</u> <u>및 관리·운영에 관한 정책</u> 6. <u>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u> <u>설치</u> 7. <u>공급망안정화를 위한</u> <u>외국정부와의 협력 및</u> <u>공동연구·인력교류</u> <u>제6조의3</u> (현행 제6조의2와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표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	·	·
			<u>1,068</u>		<u>1,082</u>	+14	
·			·		·		
·			·		·		
일반직	계		<u>1,058</u>		<u>1,072</u>	+14	
고위공무원단			<u>38</u>		<u>39</u>	+1	
·			·		·		
·			·		·		
서기관			<u>67</u>		<u>69</u>	+2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91</u>		<u>92</u>	+1	
·			·		·		
행정사무관			<u>390</u>		<u>398</u>	+8	
·			·		·		
행정주사			<u>124</u>		<u>126</u>	+2	
·			·		·		
·			·		·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068</u>	• <u>1,082</u>	+14
•	•	•	
•	•	•	
일반직 계	<u>1,058</u>	<u>1,072</u>	+14
고위공무원단	<u>38</u>	<u>39</u>	+1
•	•	•	
•	•	•	
서기관	<u>67</u>	<u>69</u>	+2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96</u>	<u>97</u>	+1
•	•	•	
행정사무관	<u>404</u>	<u>412</u>	+8
•	•	•	
행정주사	<u>104</u>	<u>106</u>	+2
•	•	•	
•	•	•	